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 902

2019. 8. 29. 기획경제위원회

I 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8월 7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
다. 상정결과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】

-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(2019.8.29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 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기획조정실장 서정협)

1. 제안이유

○ 남북관계의 지속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남북협력

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○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'남북협력추진단'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남북협력 핵심과제를 지속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나. 한시기구의 존속기한(안 부칙 제2조)

- 한시기구는 긴급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한 사업종료 시점 까지 실시·운영하는 예외적인 기구운영 방식으로, 3년간의 범위에서 조례로 존속기한을 정하고 1회(3년간)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(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).
- 현재 서울시는 '남북협력추진단'과 '지역발전본부', '문화시설추진단' 등 3개의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이 중 '지역발전본부'와 '문화시설추진단'은 지난

제286회 임시회에서 1년씩 연장되었음.

 남북협력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하여 지난 7월 26일 완료되어,
 1년 연장(2019, 11, 1, ~ 2020, 10, 30)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 별도로 제출되었음.

〈 서울시 한시기구 운영 현황 〉

부서명	존속기한	주요업무
지역발전본부	2019.07.01.~2020.06.30	서울의 성장 동력 육성과 신경제 중심지 조성
문화시설추진단	2019.08.19~2020.08.18	문화 향유권 회복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
남북협력추진단	2018.11.01~2019.10.31	서울-평양 도시교류를 통해 통일기반조성을 강화 하고 민간·정부·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

다. 한시기구의 연장 필요성

- 남북협력추진단은 지난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·번영의 토대가 확산되고, 남북교류 수요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2018년 11월 남북교류 전담 조직으로 신설되었음.
- 이후 '서울-평양 도시' 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협의와 추진이 용이한 사업에 집중하면서, 비정치적 분야의 실행 가능한 교류협력 사업 발굴과 시민이 공감하는 통일문화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확대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왔음.

-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, 민간단체 협력을 통해 평양, 평안도, 황해도, 함경도 내 영유아 보육시설에 식량과 물품 지원1)과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으며, 유엔세계식량계획(WFP) 기구를 통해 100만 달러 규모의 식품 지원2) 등을 추진하였음.
- 또한, 국내·외 민간단체 등의 협력을 통한 의약품 긴급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과 통일문화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³⁾을 추진하였음.

【 주요 대북협력사업 추진실적 】

- ◇ 2032서울-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하여 통일부, 문체부, 대한체육회 등 유관 기관과 상시협의 채널 구축('19.2월~)
- ◇ 대동강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'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' 구성·운영('19.1월~)
- ◇ 유엔세계식량계획(WFP)과 협력하여 대북식량 지원 추진('19.6월~)
- 향후에도 '서울-평양 도시협력 포럼'을 통한 실질적 남북협력 과제 발굴 등 문화, 경제, 사회, 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.

^{1) 17}억 3천만원 규모의 밀가루 3.260톤, 온실용 비닐 24톤, 콩기름 70톤 상당.

²⁾ 영유아 3만 3천명에게 영양 강화식품 6개월 제공 분량 : 영양 강화식품은 시리얼·비스켓으로 WFP가 북한 내 11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이며, WFP 평양사무소 주관으로 생산시설·분배현장 등을 수시 점검하고 있음.

³⁾ 시민공모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확대 : 청년평화아카데미 및 민간단체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,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, 제3차 남북정상 회담 지원 및 홍보(12건) 등.

【향후 대북협력사업 추진 계획 】

- ◇ 서울-평양 '도시협력 포럼'을 통해 실질적 남북협력 과제 발굴
- ◇ 통일축구대회 정례화, 교향악단 합동공연, 문화유산 답사 등 문화, 예술·체육 교류 활성화
- ◇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, 스마트 시티 협력사업, 산림·환경, 보건·의료를 비롯한 도시 인프라 및 경제 개발. 인도적 지원 등 협력분야 확대 추진
- 이와 같이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연속적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'남북협력추진단' 기구 존치의 필요성은 인정됨.
- 다만,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치·운영하는 한시기구로는 남북협력추진사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음.
- 특히 국제적 대북제재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 미사일발사가 재개되고 대남 비난이 계속되고 있어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감이 높아 지고 있음.
- 따라서 향후 남북협력관계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맞춰 서울-평양간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인정된다면,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 단위로 단편적으로 연장하기 보다는 정규기구로의 편입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.

○ 한편, 이들 한시기구를 포함하여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시장방침으로 정규기구처럼 설치·운영하고 있는 4개의 임시 법외기구⁴⁾에 대해서도 행정조직운영의 합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Ⅷ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

⁴⁾ 시장방침으로 설치된 임시 법외기구 : 국제협력관(2013.12.02), 대기기획관(2011.11.29), 재생정책기획관 (2012.09.28), 주거사업기획관(2011.11.29)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남북관계의 지속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남북 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 까지 1년 연장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8조, 제9조, 제9조의2, 제21조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2019, 7, 25, ~ 7, 29,) 결과: 의견없음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690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"2019년 10월 31일"을 "2020년 10월 31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칙 <제6905호, 2018. 10. 4.>	부칙 <제6905호, 2018. 10. 4.>
제1조(시행일) (생략) 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21조제3항의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은 <u>2019년 10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(생략)	제1조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 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존 행정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추가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
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문제호(☎ 2133-6724)